

# 코로나19 긴급 대응 비대면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장애인 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예술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비대면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업기간 : 결과발표일 ~ 2021년 2월

◎ 공모접수 : 2020년 8월 10일(월) ~ 8월 28일(금) 18:00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지원신청서(\*별첨)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심의 : 2020년 9월 초 / 외부 전문가 서류 심의

※ 긴급 추진 사업에 따라 인터뷰 심사 제외 등 절차 간소화

◎ 결과발표 : 2020년 9월 중(예정)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홈페이지 공지

◎ 지원대상 : 장애인 예술가, 장애인 예술단체

※ 다음 3개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 ①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② 단체 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 ③ 최근 5년 간 3년 이상 장애예술 활동을 수행한 단체

◎ 지원규모 : 4억 원 내외

◎ 지원분야 : 예술 창작 및 발표 활동에 대한 비대면 사업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 예술일반 등)

◎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지원유형         | 지원내용 및 지원 분야                                                                                                 | 지원규모            |
|--------------|--------------------------------------------------------------------------------------------------------------|-----------------|
| 비대면 콘텐츠 제작   | - 공연 영상, 작품 콘텐츠 제작 등 창작 활동 및 국제교류 기반 조성을 위한 비대면 콘텐츠 제작<br>(공연 영상, 아카이브 영상 등 공연, 전시에 따른 창작물 영상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 단체/<br>최대 2천만 원 |
| 비대면 예술 창작 활동 | - 비대면 국제교류, 협업, 공동창작 등 예술 활동<br>- 장애예술 관련 비대면 (학술)행사, 발표(공연, 전시), 작품 제작, 조사 등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예술 활동         | 개인/<br>최대 8백만 원 |

※ 본 사업은 대면 방식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비대면 중심의 콘텐츠 제작, 공동작업 및 협업을 우선 지원합니다.

## ◎ 지원항목 : 사례비, 제작비, 대관료 등 직접 경비 지원

※ 타 항목 지원 불가, 긴급 지원에 따른 지원항목 간소화로 정산 편의 제고

### \* 지원항목 예산 편성 기준

- 사례비 : 지원금 총액의 50~70% 이내 편성
- 제작비 등 : 지원금 총액의 30~50% 이내 편성

## ◎ 지원신청 자격

(장애인 예술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장애인 예술단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1종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회원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

## ◎ 제출서류 및 자료

- (공통) 지원신청서 (\*별첨 양식 작성,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 (공통) 신청자(단체)의 3년간 문화예술 활동경력 및 실적 증빙자료 '지원신청서'내 첨부
- (개인) 장애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복지카드 등) '지원신청서'내 첨부

## ◎ 심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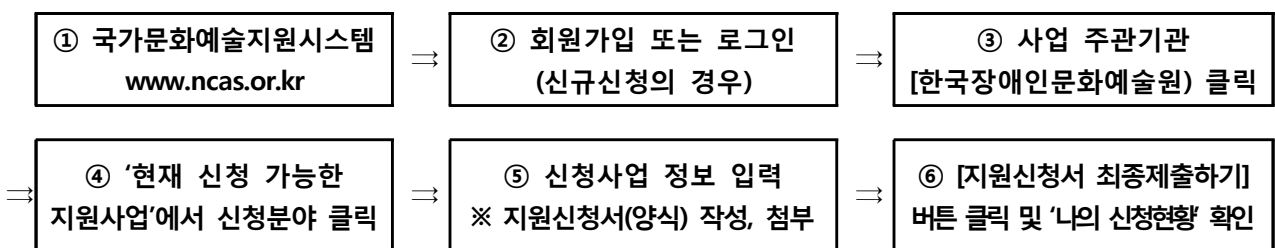
사업목적의 적정성 (20%)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행가능성 (30%)

사업수행 역량 및 실행능력 (30%)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20%)

##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별도 양식)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수정을 마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함)
-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
-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 지원신청 제한

- 본 공고의 2개 사업유형 중 한 신청인·단체 당 1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
  -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
  - 2020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정기공모 2개 사업** 선정자·단체  
(단 공고일 기준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1개 사업 이상 포기한 단체는 지원 가능)
  - **기획공모** 선정 단체,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사업**' 및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단체는 지원신청을 제한함.
  - 한 신청인·단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고, 문예진흥기금, 지역재단, 지자체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택일하여야 함.
- ※ 금년 타 기관 지원 및 선정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서**'내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선정 후 동일한 내용의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발견될 경우, 사업내용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함

## ◎ 사전 안내 및 유의사항

- 지원규모는 지원 대상(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 및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사업은 인건비성 경비, 제작비, 대관료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항목 외 타 항목 예산편성 불가함
- 지원사업 신청 시에 총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심의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은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물(영상 등 기록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이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별도로 협의함
- 금년 타 기관 지원 및 선정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서**'내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선정 후 동일한 내용의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발견될 경우, 사업내용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함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은 **e나라도움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및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정산·실적보고 단계를 진행**함. 이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별도로 협의함
- 사업 종료 후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정산(지원금 지출에 대한 집행내역 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 및 **사업 실적보고, e나라도움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개인)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규정」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해야 함

- 추후 주관기관에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증 제도 시행

• 회계검증 제도 안내

예술인/단체가 지원금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원금 집행-정산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확보를 위하여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증제도 시행  
향후 집행정산 단계에서 정산 회계검증 절차 및 세부내용 안내 예정

◎ 지원신청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및 소속 단체, 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주목적이 순수 예술 활동이 아닌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각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
-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장 <제16조>의 보조금 교부조건 적용대상 단체
- 2019년도 지원대상으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2019년도까지 지원대상 사업 중 지원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단,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
- 기존 사업 참여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전 집행기관) 및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 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개인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해당하는 피의사실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 확정 전인 자 또는 그 자가 단체의 주요 구성원에 포함되어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개인

◎ 문의 (※ 문의 시 아래 사업별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운영팀 |                          |
|------------------|--------------------------|
| • 비대면 콘텐츠 제작     | 02-760-9727, 02-760-9725 |
| • 비대면 예술 창작 활동   | 02-760-9707, 02-760-9721 |